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합5838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박지영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건륜

변론 종결2021. 10. 1.

판결 선고2021. 10. 2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1) 원고는 용융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강판과 도장강판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지붕판금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도금강판, 컬러강판 등을, 피고로부터 글라스울1) 을 각 공급받아 샌드위치 판넬 제작·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

원고는 2016. 7. 28. C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C에게 도금강판, 컬러강판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C로부터 그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2020. 5. 4.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98,836,312원에 달한다.

(금액 단위: 원)

2019. 12. 31.	645,245,150		492,702,000
2020. 1. 31.	395,280,897		395,280,897
2020. 2. 29.	656,855,045		656,855,045
2020. 3. 31.	818,618,713		818,618,713
2020. 4. 30.	859,828,640		859,828,640
일반채권 합계	3,223,285,295		

2020. 2. 28.	2020. 5. 31.		100,000,000
2020. 2. 28.	2020. 6. 30.		200,000,000
2020. 2. 28.	2020. 7. 28.		300,000,000
2020. 3. 31.	2020. 8. 15.		247,961,867
2020. 3. 31.	2020. 8. 31.		300,000,000
2020. 3. 31.	2020. 8. 31.		391,172,000

2020. 2. 28.	2020. 5. 31.		100,000,000
2020. 4. 24.	2020. 9. 16.		136,417,150
어음채권 합계	1,675,551,017		
총합	4,898,836,312		

다. 피고와 C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C에게 건축자재인 글라스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C가 발행한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는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의 물품공급에 대한 대가로 C로부터 합계

2,101,428,042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으나, 2020. 5. 4.까지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2) C 측은 2020. 5. 4.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신 C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와 C는 같은 날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는 2020. 5. 6.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C의 당좌부도 발생

C가 발행하여 건축자재 등 공급회사들에게 교부한 전자어음 중 만기일이 2020. 4. 30.인 전자어음이 2020. 5. 4.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당좌부도)되었고, C는 2020. 5. 7. 위 당좌부도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C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C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20. 5. 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권리 행사가 원고로 인해 방해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C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다) C는 최종 부도를 앞둔 2020. 5. 4.경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C가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안분 양도하였고, 이와 같이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 중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심지어 C의 채권자들 중 원고가 가장 큰 금액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는 C가 채무의 공평한 변제를 위하여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C가 안분하여 양도하는 채권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C의 부도 사실을 확인한 즉시 C 소유 유체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에 착수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C의 매출 실적 등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여 C가 파산의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C의 자산 처분 내역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20. 5. 4.경 C에 대하여 합계 4,898,836,31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2) C가 2020. 5. 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C는 2019.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이 약 381억 원, 부채 약 354억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약 27억 원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2) 피고가 물품공급의 대가로 C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어음 중에는 만기일이 2020. 3. 31.인 전자어음도 있었으나, C의 만기 유예 요청에 따라 만기일이 2020. 4. 30. 이후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만기가 유예된 전자어음은 앞서 본 당좌부도로 인하여 결국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3) C는 2020. 5. 4.경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11명의 채권자들²⁾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C가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일부씩 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다만 그 양도 대상 채권액은 원고의 경우 893,994,292원, 피고의 경우 331,943,860원에 불과한 등 채권자들의 실제 물품대금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C(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목적)채권의 표시]: 구체적 내용 생략

제2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위 채권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양도한다.

제3조 [통지의 의무]

"갑"은 "을"을 위하여 양도 후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얻는다.

제4조 [보증 및 담보]

"갑"은 제3채무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보증하며, 또한 양도 대금의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5조 [특약사항]: 구체적 내용 없음

(4) 피고는 2020. 5. 21.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공장건물 소재

유체동산 일체(샌드위치 판넬 등 제조품, 강판, 기계설비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카합5057),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20. 5. 26. C의

공장건물 소재 샌드위치 판넬 제조용 강판 코일 512개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위 가압류집행을

실시한 집행관은 집행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 집행장소 내에 소재한 별지 압류물에 대하여는 N은행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된 물건이라 '명인방법'이 되어 있으나, 동산담보 등기를 확인한바, 2016. 8. 30.자로

담보등기가 접수되었으나 별지 압류물의 제작은 2020년도로 확인되고, 담보목적물의 종류 및 특성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에 별지 압류물과 담보물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점유로 있기에 집행을 강하게 요구함. 위 사항을 근거로 집행을 실시함.

(5) C가 발행한 전자어음은 C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이후 전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C에 대한 위 거래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C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C가 2019.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를 약 27억 원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는 2019. 12. 31.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20. 5. 4.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가 피고에게 만기일이 2020. 3. 31.인 전자어음의 만기 유예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2020. 4.경 이미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만기 유예에도 불구하고 결국 C의 당좌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2020. 5. 4. 당좌부도가 발생하였다.

③ C가 2020. 5. 4. 당시 보유한 자산은 주로 기계설비 및 제조물 등 유체동산과 물품대금채권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설비 등의 경우 상당 부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물품대금채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주요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C는 위 당좌부도가 발생할 무렵 주요 자산인 위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양도하였고, 당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C가 보유한 채권을 C의 채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 외에 C의 계속사업을 전제로 한 아무런 특약사항(향후 C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계약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양도 대상 채권액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C는 2020. 5. 4. 당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어 위와 같이 주요 자산을 일괄적으로 처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등 채권자들이 C의 제조물 등 유체동산에 대한 광범위한 가압류 집행을 마침으로써 C의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C 측에서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C는 위 당좌부도 이후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 5. 4. 발생한 당좌부도가 단순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C의 재무상황이 점차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0. 5. 4.경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C가 피고에게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채무자인 C가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2020. 5. 4.경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안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근거로 드는 갑 제6호증,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C가 채권을 양도하여 준 채권자들 중에는 금융기관 등 일부 채권자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C가 채무의 공평한 변제를 위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양도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2020. 5. 4.경 양도받은 채권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약 18.2%(= 893,994,292원 ÷ 4,898,836,312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고가 양도받은 채권은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약 15.8%(= 331,943,860원 ÷ 2,101,428,042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위 각 비율만으로도 C의 채권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정확히 비례하여 안분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 그

물품대금채권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채권자들 전부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안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C가 보유한 채권을 임의로 나누어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채권의 임의 배분을 두고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 말하는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C의 일반 채권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만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별개의 또 다른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C의 일반 채권자들 중 가장 많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20. 5. 4.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게 되면 공동담보 부족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라.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만기일이 2020. 3. 31.인 전자어음의 만기를 한 차례 유예하여 준 상황에서 C 측으로부터 어음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가 양도받은 채권액이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으므로, 당시 C의 재무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도 대상 채권을 이미 추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장민경

판사오주훈

별지

1) 글라스울(Glass wool)은 규사, 파유리 등의 유리 원료를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하여 고속회전기에서 섬유상의 형태로 뽑아내어 만든 무기질 섬유로서, 단열, 흡음성능 및 불연성이 뛰어난 건축자재이다.

2) 원고, 피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